

충청북도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9월 8일

○ 회부일자 : 2003년 9월 8일

3. 제안이유

-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2003.5.29, 법률 제6902호) 시행됨에 따라 중평군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대비하여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선거구 조정
  - 중평군 : 2선거구(중평읍선거구, 도안면선거구)를 신설하고
  - 괴산군 : 13선거구  $\Rightarrow$  11선거구 (중평읍선거구, 도안면선거구 폐지)로 함
- 의원정수 조정
  - 중평군 : 7명(중평읍선거구 5명, 도안면선거구 2명)으로 하고
  - 괴산군 : 13명  $\Rightarrow$  11명( $\Delta$ 2명 : 중평읍선거구 1명, 도안면선거구 1명)으로 함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중평 주민들의 염원이던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6902호)이 시행되어 2003. 8. 30일부터 중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중평군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중평군의회의원선거구 2개소를 신설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정수를 7명 (중평읍일원 5명, 도안면일원 2명)으로 정하려는 것과,

괴산군의회의원선거구중 중평군 관할 2개 선거구를 삭제하고, 의원정수 13명 중 2명을 감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